

1998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定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8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回附豫算

가.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12월 12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12월 14일 상정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12월 18일 의결

3. 提案設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 제안이유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을 위하여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9,6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03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564백만원, 지방교부세 18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4,24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70백만원, 예비비등 12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69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승인받은 채무부담 행위는 재해특별교부세등 잉여재원 발생으로 전액 감하하자 함.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허해성)

○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액 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및 불요 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총 1,196억 9,03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1억 5,484만원대비 2.8%인 34억 6,453만원이 감액되었음.

- 회계별로 증감내역을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인 35억 239만원이 감소한 반면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4%인 3,78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세입은 35억 23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5억 6,392만원 증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균유림 입목매각 수입 5억 4,687만원이 증가된데 있고

-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 증액은 '98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방비부담 보전분에 따른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국고보조 38억 9,159만원 감액은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98 가을착수 받기반정비 사업비 41억 3,462만원이 강원도 사업

인가 변경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이 99년도 마무리 예산으로
배정됨에 따른 감액 편성되는데 있고, 자활보호특별생계비,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
등은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도비보조금 3억 5,472만원 감액은 '98 가을착수 받기반정리
사업비 5억 1,682만원의 감액과 일반준용하천 개수비(송천)
1억 5,000만원, '99동계대회 홍보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35억 23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1억 9,089만원, 물건비 1억
4,417만원, 자본지출 37억 3,829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전경비
4억 4,775만원, 예비비 1억 2,3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
났음.

- 일반행정비는 총 3억 7,234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
예산 204억 9,225만원 대비 1.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개발비는 총 2억 6,493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
예산 263억 236만원대비 0.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경제개발비는 총 37억 1,233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
예산 648억 6,042만원대비 5.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민방위비는 총 2,076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
2억 6,855만원 대비 7.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한 15억 5,8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예산액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개 사업에 3,78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개 사업에 3,78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5. 質疑 및 答辨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	○ 행자부 지침상에는 예산편성토록되어 있으나 우리군에는 별필요성이 느끼지 못해 활용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음.
2. 전자식 토탈스테이션 측량기,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등은 절반가량이 제3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정확한 견적이나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1년을 추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고장이 나지않아 집행하지 않아 미집행하였고, 교통 안전시설은 경찰서에 집행하고 남아 삭감한 것임.
3.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에 대한 현실화 의향은 없는지?	○ 국가적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판단됨.
4. 내고향담배 팔아주기 수용비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향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
5.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른 경비부담은?	○ 군비에서 1000만원, 도비 2,000만원 동계조직위에서 4,000만원, 용평에서 3,000만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며 숙박은 용평리조트에서 부담할 계획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6.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를 감한 이유는	○ 실시설계에 따른 차액부분임.
7. 보건의료원 입원실 확충계획은 없는지	○ 내년사업으로 입원실을 확충할 계획임.
8. 화훼생산시설 유통지원 사업대상지는?	○ 도암면 병내리임
9. 호우피해농가 생계지원비의 사업계획과 선정기준은?	○ 전체경지 면적에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차원의 지원임.

6. 討 論 要 旨

- 가.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인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다 해도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이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97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의회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의지가 엇보인 것임.
- 나.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 조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일부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미집행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한다고 판단됨.

7. 修 正 案 要 旨

가. 수정이유

나. 수정주요골자

8. 審 査 結 果

- 일반회계 : 원안의결
- 특별회계 : 원안의결

9. 少數意見의要旨

10.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